『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정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4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동물 학대 금지에 대한 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어 근본적인 영역에서 학대 및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

력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과 지원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법령의 재정비 이후 조례를 함께 정비하지 못하여 시의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제안요청 드린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의 정의를 법령에 따른 내용과 일치시킴으로써 용어사용의 혼동을 방지하는 한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수립된 계획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법령에서 나타내는 문언의 의미를 보다 충실히하고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며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우 효율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 5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학교 내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조문을 새롭게 추가하여 동물학대 예방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이에 학생들이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명존중 의식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생명존중 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